

유엔을 통한 다양한 가족의 등장과 우리나라 법과 교육과정에 끼친 영향력

현숙경 침신대 교수

I. 들어가면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은 2020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등장하고, 최근 2022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건강 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큰 논란이 빚어졌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까지의 단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가족’을 허용하도록 하는 시도 이면에는 보편타당하고 자연적인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려는 의도가 있다. ‘다양한 가족’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예야 불거졌지만, 본격적인 논란의 시작은 90년대 유엔의 국제무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 발표는 가족의 외해 현상의 근원과 흐름을 국제적인 맥락과 연관지어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본 발제는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개념 정리를 시작으로 페미니즘의 근원지인 미국에서 페미니즘의 등장으로 가정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한 페미니즘이 유엔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유엔이라는 무대를 통한 전 세계적인 가족 해체 시도의 경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유엔 주재의 국제대회와 협약을 통해서 유입된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의 법과 교육을 통해 어떠한 가족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발표는 남녀갈등으로 인한 가족의 외해 현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모색을 위해 가족 외해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법과 교육의 왜곡의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페미니즘 및 젠더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가족의 와해

1.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 요약

	페미니즘(1960s ~)	젠더 이데올로기(1990s ~)
사회구조	가부장제: 남자 vs. 여자	가부장제: 이성애자 vs. 비이성애자
젠더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구성된 성 정체성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반복적인 성적 행위(지향) 혹은 느낌을 통해 구성된 성 정체성
성	섹스 --> 젠더 --> 성적 지향	성적 지향 --> 젠더 --> (섹스)
목표	섹스(임신, 출산)의 거부를 통한 남성중심 젠더 규범에서의 해방	이성애중심 젠더 규범 해체를 통한 비이성애적 젠더의 용인 (궁극적으로 성별 구분에서의 해방)

1960년대 북미에서 시작한 페미니즘(2세대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근원이라고 여겼으며 가부장제 타파를 통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 시기의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인 차이(섹스)에서 성불평등의 원인을 찾았고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여성은 사회 문화 속에서 지속적인 불평등을 겪으며 여성으로서의 특정한 행동과 성향을 요구 받는다고(젠더) 주장한다. 결국, 타고난 성(섹스)으로 인해서 젠더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타고난 성을 거부할 때 비로소 젠더 규범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부터의 시기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페미니즘의 이분법적인 젠더의 패러다임을 뒤바꿔놓았는데,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주디스 버틀러이다. 버틀러도 가부장제를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부장제가 결국 남성과 여성만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기존의 가부장제는 결국 이성애 중심적인 개념이며 그 이분법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을 배제해버리는, 즉 “젠더 규범의 폭력(the violence of gender norms)”을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¹³¹⁾

버틀러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이다. 이는 ‘행위’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서 생물학적인 성을 철저히 배제한다.¹³²⁾ 그녀에 의하면, 애초에 젠더 정체성이란 없고 이 정체성도 ‘표현’ 혹은 행위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즉, 버틀러에게

131)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New York, 1999. xix.

132) 앞의 각주 1)번, 33.

있어서 섹스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녀에게 생물학적인 성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몸(물질)에 불과하고 단지 반복적인 행위와 표현을 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물질에 불과한 몸이 어떠한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기능을 할 때에 비로소 그 몸이 젠더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고난 성별(sex)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반복적인 성적 수행과 표현의 결과로서 젠더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그녀의 논리에 따르면, 이성애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성적 행위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젠더 정체성도 바뀔 수 있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 반복적인 비이성애적 성적 표현 또는 행위를 통해서 기존의 이성애적 젠더 규범을 허물고자 하는 것이 버틀러를 비롯한 젠더 이데올로기 주장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 페미니즘의 실제

미국의 대표 페미니스트이며 “여성 해방의 모택동”(the Mao Tse-Tung of Women’s Liberation)이라고 불리는 케이트 밀렛(Kate Millett)은 미국 최대여성단체인 북미여성단체(NOW)를 결성했으며 1970년대 미국 대학 내에 여성학을 시작한 인물로서 유명하다. 그런데 그녀의 동생이자 미국의 pro-life, pro-family 운동에 앞장서는 맬로리 밀렛(Mallory Millett)이 2018년에 본인의 언니 Kate를 중심으로 시작된 페미니즘이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게 됐는지에 대한 인터뷰 및 글들이 대중에게 알려져 큰 화제가 되었다. 맬로리 밀렛이 1960년 당시 케이트가 이끄는 지하 여성조직 모임에 참석해서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Kate: “우리가 오늘 왜 여기 모였지?”

Others: “혁명을 하기 위해”

Kate: “어떤 종류의 혁명이?”

Others: “문화대혁명”이라고 외쳤다.

Kat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문화 혁명을 만들까?”

Others: “미국 가족을 파괴함으로써!”

Kate: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지?”

Others: “미국의 가부장제를 파괴함으로써”

Kate: “그러면 어떻게 미국의 가부장제를 파괴할 수 있을까?”

Others: “일부일처제를 파괴함으로써!”라고 그들은 외쳤다.

Kate: “우리가 어떻게 일부일처제를 파괴할 수 있을까?”

Others: “문란함, 에로티시즘, 매춘, 동성애, 다자성애, 수간, 사탄숭배, 소아성애 등 모든 금기를 깨으로써!”¹³³⁾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페미니즘은 결국 가족의 파괴를 넘어서 모든 금기를 깨부수기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악한 이념일 뿐이다.

3. 페미니즘과 미국 가정의 붕괴

1960년대 급진적인 여성해방운동은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운동이 사회 전반에 끼친 피해는 심각했다. 1960년대에는 1000 커플 중 2.2 커플이 이혼했으나 1969년 무책 이혼법의 통과를 기점으로 이혼이 급증하여 1980년대 1000 커플당 5 커플이 이혼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¹³⁴⁾ 또한, 혼인율은 1970년대 1,000명 중 10.6명대에서 2018년 6.5명으로 감소했고¹³⁵⁾ 출산율은 1957년 3.7명대에서 1980년대에 1.84명대로 하락했으며¹³⁶⁾ 비혼과 동거의 증가¹³⁷⁾와 함께 미혼모가 급증¹³⁸⁾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미혼모의 증가는 사회문제로 직결되었는데 연구 결과 미혼모에 의해 길러진 아이들이 청소년 살인의 72%, 강간의 60%, 10대 출산의 70%, 자살의 70%, 고등학교 중퇴의 70%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¹³⁹⁾ 이 이외에도 미혼모의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 무단결석, 갭단 가입, 약물 남용, 노숙자(출가 아동의 90%는 아버지가 없음), 그리고 40배 더 높은 성적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었다.¹⁴⁰⁾

이렇듯 가정에서의 해방, 성의 해방, 출산으로부터의 해방, 직장에서의 탈출을 통한 가부장제 타파의 외침은 결국 수많은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했으며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했다. 이러한 가정의

133) Kate Millett. "My Sister Kate: The Destructive Feminist Legacy of Kate Millett: A Conversation with the Feminist Icon's Sister." Interview. Front Page Magazine. Feb. 7, 2018. <https://www.frontpagemag.com/my-sister-kate-destructive-feminist-legacy-kate-mark-tapson/>

134) Esteban Ortiz-Ospina and Max Roser. "Marriages and Divorces", OurworldinData.org. visited March 16, 2021. <https://ourworldindata.org/marriages-and-divorces#divorce-rates-increased-after-1970-in-recent-decades-the-trends-very-much-differ-between-countries>.

135) Sally C. Curtin and Paul D. Sutton. "Marriage rates in the United States, 1900–2018." Health E–Stats (April, 2020): 4.

136) Brady E. Hamilton, "QuickStats: Expected number of births over a woman's lifetime—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 United States, 1940–2018."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9.1(2020): 20.

137) Benjamin, Gurrentz, "For Young Adults, Cohabitation is Up, Marriage is Down", United States Census Bureau, last modified Nov. 11, 2018. <https://www.census.gov/library/stories/2018/11/cohabitation-is-up-marriage-is-down-for-young-adults.html>.

138) Sara McLanahan and Christopher Jencks. "Was Moynihan Right? What Happens to Children of Unmarried Mothers." Education Next 15.2(2015): 14–20.

139) Fix Family Courts. "Fatherless Single Mother Home Statistics." last modified March 20, 2017. <https://www.fixfamilycourts.com/single-mother-home-statistics/>.

140) Phyllis Schlafly. Who Killed the American Family? WND Books, 2016. 26.

외해는 1969년 무책이혼법 제정, 1973년 미국의 낙태 일부 합법화(Roe vs. Wade) 등의 법제화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페미니즘으로 인한 가족 해체의 움직임은 6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유엔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II. 유엔을 통한 (여)성해방, 그리고 가족 개념의 변질

1. 1990년대 유엔의 패러다임 전환

세계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1945년 설립된 유엔은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국가간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했으며, 이와 함께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족이 보호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방향성은 1948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문’의 제16조에 명확히 드러난다:

제1항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제3항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¹⁴¹⁾

그러나 전쟁의 종식과 세계평화에 앞장서던 유엔은 1990년대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유엔은 세계를 하나로 묶었던 주요 어젠다 하나를 상실했다. 이러한 틈을 타 포스트모더니즘에 경도된 비정부 소수자들과 성해방론자들을 중심으로 ‘인권’, ‘평등’,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윤리가 출현했는데, 이는 기존 서구의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보편적 윤리와 철저히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90년대부터 새로운 윤리를 기반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대회가 매년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들은 새로운 어젠다를 등장시키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관찰시킴으로써 기존 유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패러다임 전환에 영향력을 끼친 세력은 회원국이 아닌 비정부기구(NGO)들과 초국가적 기업들이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국제대회 개최부터 어젠다 설정, 행동계획 작성에 이르는 전반적인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141)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last accessed March 10, 2023.

비정부 조직 및 소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운영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라고 한다. 결국, 유엔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새로운(포스트모던적, 혹은 포스트막시즘적) 어젠다를 각 회원국들에게 관철시킴으로써 각 회원국들의 주권과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서 초국가적 NGO 단체들과 소수의 전문가 집단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수립이며, 자국의 이익보다 세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계시민의 양성이다.

90년대 유엔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대표적인 회의가 바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그리고 1995년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대회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기존의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을 특정 집단—즉, 사회적 약자—을 위한 것으로 재해석한 대회라고 한다면,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는 국가적 인구 통제를 개인의 결정권으로 전환시킨 회의이며,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NGO 페미니스트 및 성해방론자들에 의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이 여성의 인권으로 둔갑한 회의이다. 위 국제대회는 공통적으로 가족의 개념을 변질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회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럼 각 대회가 지닌 위험성과 이들 대회가 가족 개념의 변질을 가져온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집중

1)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국가인권위원회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인권을 부각시킨 대회로서 이 대회를 기점으로 인권의 개념이 철저히 왜곡 해석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 대회에서 발표된 행동계획을 각 회원국들에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문제의 소지가 많은 내용 세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각 회원국들은 모든 인권 사안을 공정하고 균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가별 문화와 문화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균등’하게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에 맞게 인권 문제가 다뤄져야 마땅한데, 이 내용은 국가, 지역, 및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두 번째, 비엔나 행동계획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종, 여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아동 등에 대한 인권을 각 영역별로 서술하고 있는데, 서론에 보편적인 인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긴 하나 이는 소위 사회적 ‘약자’ 집단의 인권을

은근슬쩍 내세우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 번째, 각 국가별로 비엔나 행동계획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위의 특정 집단의 인권을 모든 국가가 공정하고 ‘균등’하게 다룰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며, 인권 관련 교육을 진행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한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서 비엔나 행동계획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행동계획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가 비엔나 행동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NAP에 반영하여 우리나라 법 제·개정 및 다양한 통로의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인권을 강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 교과서 내 ‘가족’ 개념 수정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교과서에 나타나는 인권침해적인 내용, 혐오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기 시작했는데, 수정 권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개념이다.

2002년 지학사에서 출판된 중1 기술·가정은 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나와 가족관계

가족(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은... 가족관계의 특징은... 첫째, 애정과 혈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어... 부모 자녀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져 조건 없는 애정을 주고 받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가족 개념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상기에 적시된 부분은 가족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의 가족관계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감안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형태가 절대적이며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¹⁴²⁾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그 이후 교육과정에 보편적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 개념이 삽입되기 시작했다. 한 예로, 2013년 미래엔에서 출판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제목으로 ‘비혼, 동성 커플, 비혈연’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3.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 ‘재생산권’과 ‘다양한 가족’의 등장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는 그동안 인구 조절의 문제를 국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에서 개인의 ‘권리’와 ‘건강’의 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중요한 대회이다. 이 대회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즉, 여성의 생식 건강과 관련된 권리 보호에 대한 것이었다. “자녀의 수와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재생산권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제로 낙태를 여성의 인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회였다.

물론, 재생산권 개념은 이 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1968년 테헤란 제1차 유엔 세계인권회의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69년 유엔 사회진보발전선언과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재생산권이 등장했다. 이 등장은 NGO 페미니스트들의 유엔 내 활동의 확장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당시 냉전과 인구 조절 등 유엔 내의 큰 어젠다에 비해 여성 관련 문제는 유엔 내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므로 재생산권은 논의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유엔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힘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대표적인 회의 중 하나가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인 것이다.

출산과 관련된 결정은 여성 개인의 권리라는 ‘재생산권’ 개념의 재등장은 당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구 통제에 불만과 피로도를 느낀 회원국들에게 신선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실제 많은 회원국들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기꺼이 환영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바로 ‘다양한 가족(various forms of family)’이다.

물론, ‘재생산권’ 및 ‘다양한 가족’이 논의되던 당시 이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국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다양한 가족에 대해 반대하던 회원국들은 대부분 비서구권의 가톨릭 및 남미 국가들이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전통 가족의 중요성을 자국의 헌법 및 각종 법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명시하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몇 국가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⁴³⁾

14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및대회협력소위원회.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 2002.10.28.

143)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5-13

- 라틴 아메리카: 가족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 온두라스: 카이로 행동강령에 언급된 types of families, different types of families, other unions의 표현에 동성의 결합이 포함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 니카라과: 다양한 가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본질(남녀의 결합)을 바꿀 수는 없다.
- 파라과이: 우리나라 헌법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며, 그 관점에서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various forms of the family)을 인정하겠다.
- 아르헨티나: 다양한 가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가족의 결합은 자녀 생산이 가능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만 가능하다.

이 외에 과테말라, 비티칸 시국, 몰타 등 20여 개국이 ‘다양한 가족’ 개념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유엔 내 본격적 논쟁의 시작

‘다양한 가족’ 개념은 1994년 카이로 회의를 기점으로 유엔 회의에 수차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회의가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26차 회의이다. ‘국제 가족의 해’ 2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가족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여기에서 의미하는 가족이란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한 전통적 가족이다), 46개 이사국 중 전통가족 보호에 대한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는 26개국, 이에 반대한 국가는 14개국, 그리고 기권은 6개국이었다.¹⁴⁴⁾ 전통가족의 보호에 반대표를 던진 14개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서유럽과 북미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을 주창하는 국가들로서 그들 배후에는 LGBT 및 성혁명 로비스트가 포진되어 있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 OHCHR)에 ‘가족 보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담당시키면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원국들과 NGO 단체, 그리고 유엔 전문 기구들을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24개국과 81개 NGO 단체, 그리고 유엔 일부 기구가 가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전통 가족(family)’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양한 가족(various forms of families)’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다.¹⁴⁵⁾

September 1994. A/CONF.171/13/Rev.1.

144)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26/11 Protection of the family.” July 16, 2014.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4/086/78/PDF/G1408678.pdf?OpenElement>.

145)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Protection of the Family.”

‘다양한 가족’ 옹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NGO 단체 중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의견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모든 맥락에서 존재한다. 국가는 대가족, 한부모가족, 핵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 공동가족, **동성가족**, 무자녀가족, **일부다처 가족**, 다세대 가족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속하는 모든 개별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¹⁴⁶⁾

국제 앰네스티의 의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가족’이란 남녀의 결합과 출산으로 이루어진 자연적인 가족이 아닌 **동성커플**, 일부다처 같은 보편타당한 가족의 영역을 벗어난 연합을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가족 보호’ 관련한 여러 의견을 취합하여 2016년 1월 유엔 총회에서 ‘가족 보호’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7. 국제기구들은... 국가들에게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할 것을 요청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의 경제·사회·문화 권리 위원회도 각 국가에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¹⁴⁷⁾

결국,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철저히 ‘다양한 가족’을 용인하는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이 유엔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몇 유엔 자문 프로-패밀리(pro-family) NGO 단체들은 보고서 내용의 편향성과 거짓을 지적하면서 그다음 달인 2016년 2월 아래 내용이 포함된 대응 진술서를 제출했다:

유엔 위원회의 논평은 자칭 전문가 소그룹에 의해 발표된 것이며, 유엔 회원국들의 합의를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유엔 회원국(112개국)들은 ...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다양한 가족’은 결코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다... 요약하면, ‘가족(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아니고 동성결혼이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protection-family>.

146)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n the protection of the family and the contribution of families in realizing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October 28, 2015.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protection-family>.

147) Human Rights Council. “Protection of the family: contribution of the family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its members, particularly through its role in poverty eradication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나 커플이 이끄는 단위도 아닌)‘만이 국제법(즉, 구속력 있는 조약)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고 지지받는 유일한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¹⁴⁸⁾

2) 성해방론자들의 보편적 가족 해체 의도

이처럼 ‘다양한 가족’은 유엔 내에서 매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마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럼 왜 이토록 전통적 가족 개념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가?

90년부터 일부 비정부 성해방론자들과 LGBT 로비스트들은 유엔 무대를 통해서 성을 둘러싼 개념을 인권으로 둔갑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성해방 세력들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SRHR), 즉 성적 자유(성권리=성적 자기 결정권)와 낙태의 자유(재생산권)를 인권으로, LGBT 로비스트들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인권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인권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속한 공동체가 ‘가족’으로 재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해체되지 않는 한, 그들이 앞세우는 성 관련 인권은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LGBT+ 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미켈란젤로 시뇨릴(Michelangelo Signorile)은 동성결혼과 전통가족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성 파트너들은 사회의 도덕률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신화를 폭로하고 낡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결혼할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 . 그들은 동성 결혼과 그 혜택을 위해 싸워야 하고, 일단 허락되면 결혼 제도를 완전히 재정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전복적인 행동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⁴⁹⁾

같은 맥락에서, 유엔 여성위원회는 2017년에 출간한 <국제인권법에서 ‘가족’에 대한 현대적

148) Global Helping to Advance Women and Children. “Joint NGO Submission Addressing UN OHCHR Report on Protection of the Family Resolution 29/22.” Feb. 15, 2016. Human Rights Council.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HRC/31/NGO/155.

149) Robert P. George and Sherif Girgis and Ryan T. Anderson. “Gay Marriage, then Group Marriage?” CNN Opinion. Last updated March 21, 2013. <https://edition.cnn.com/2013/03/20/opinion/george-gay-marriage/index.html>.

관점과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대한 시사점>에서, ‘인권의 의미는 시대에 맞게 진화 (evolve)하는데, 가족 개념은 현재의 진화하는 인권(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과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개념으로써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⁰⁾

성해방의 중심에 있는 유엔 전문기구 중 유네스코(UNESCO)도 다양한 가족을 밀어붙이는 데 여념이 없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재생산권을 조장하는 <국제 성교육 가이드>(International Guide to Sexual Education)가 제시하는 가족은 성혁명 세력이 의미하는 가족과 일치한다:

2009년 버전	2018년 버전
<p>학습 목표(5~8세) 핵심 내용: 다양한 예를 사용하여 ‘가족’의 개념을 정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많은 다른 종류의 가족(many different kinds of families)이 존재한다(두 부모, 한 부모, 소년소녀가장, 대가족, 핵가족, 동성커플 부모 등). 	<p>학습 목표(5~8세) 핵심 내용: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가족(different kinds of families: 보호자-후견인 가족, 확대가족, 핵가족, 비전통적 가족)을 설명할 수 있다(지식). •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다(태도). • 다른 형태의 가족을 존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기술).

두 버전 어디에도 보편적 가족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가족에 ‘동성 커플’을 비롯한 ‘비전통적’ 형태의 모든 공동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LGBT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21년 가족의 정의규정이 삭제되고 ‘다양한 가족’ 개념이 포함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수많은 크리스천과 학부모단체들은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개정을 반대했다. 동성 커플 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역시 예상대로 다양한 가족에 동성 커플을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 건강가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결국 ‘다양한 가족 구성권’ 즉,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¹⁵¹⁾ 이로써 ‘다양한 가족’은 결국 LGBT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150) Magdalena Sepúlveda Carmona. “A Contemporary View of ‘Family’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UN Women. 2017.

15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보도자료. 2022.04.13.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860>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용인하기 위해 이용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 성과 재생산권은 여성의 인권

1995년 유엔 주재 북경에서 열린 4차 세계여성대회 역시 여성해방론자들이 전략적으로 장악한 회의로서 여성주의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대회의 키워드는 ‘여성의 인권(women's rights)’이었으며, 이 대회는 ‘여성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과 동일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¹⁵²⁾ 또한 “성과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을 여성의 권리로 규정지은 이 여성대회는 결국 “성과 재생산권”을 “분열할 수 없고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둔갑시켰다.¹⁵³⁾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가 인구통제 정책을 여성 개인의 재생산권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1995년 4차 세계여성대회는 재생산권을 여성의 인권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더 나아가 “성 권리”(sexual rights)도 여성의 인권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서구의 페미니즘의 성해방 사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공식적 발판 역할을 했다.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의 핵심 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성 주류화 전략 실행 권고, 2)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을 여성의 인권으로 선포, 그리고 3) 젠더 용어 공식적 사용 결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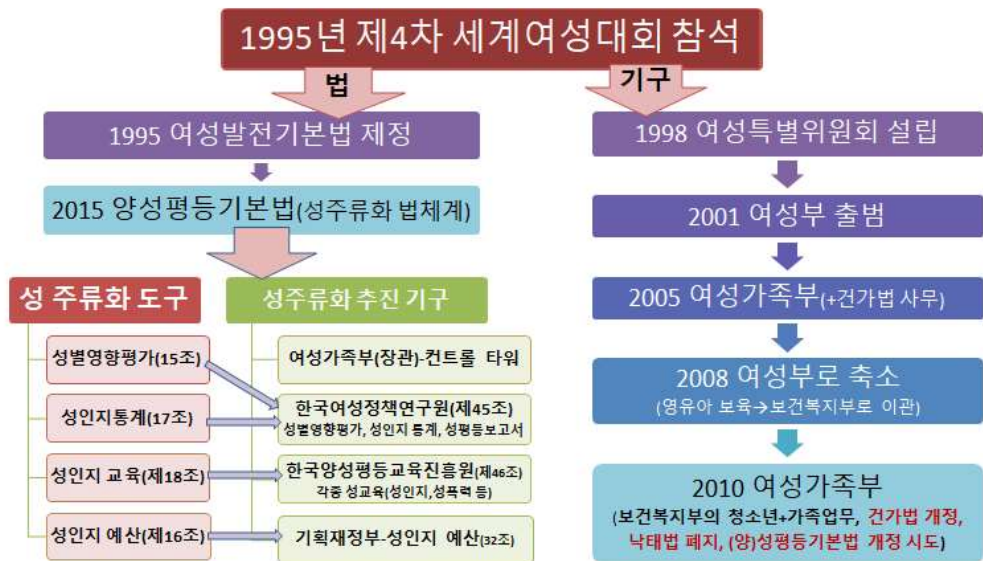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석 이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 유엔이 결의한 성 주류화 전략을 여과 없이 수용하면서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했다. 2001년도에는 여성부가 설립되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그리고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성 주류화의 법체계를 정비했고 여성가족부(2010년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는 성주류화 정책 시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됐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우리나라 법과 기구에 영향을 끼친 흐름을 다음 도표로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다.

&menuid=001004002001.

152) <https://www.un.org/esa/gopher-data/conf/fwcw/conf/gov/950905175653.txt>.

153) Charlotte Bunch and Susana Fried. "Beijing '95: Moving Women's Human Rights from Margin to Cent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2.1(1996): 200-4.



간단히 말해서 성주류화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통계를 통해서 남녀의 불평등을 수치화시킴으로써 성별 불평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성별 불평등과 차별을 인지하도록 교육시키는 성인지 교육은 결국 성차별을 더욱 양산시킴으로써 남녀의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보호와 배려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설립 당시는 여성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페미니즘 실현의 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2010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관할 업무였던 청소년 및 가족 업무를 이관받았다. 그러나 2018년 낙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던 당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외치는 유일한 정부 부처로서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부처가 아닌 오히려 가족을 와해시키고 여성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방향성을 상실한 부처임을 증명해 보였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당시 가족 개념의 삭제 및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호에 대한 조항 삽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¹⁵⁴⁾ 페미니즘에 경도된 여성가족부가 보편타당한 가족 해체에 앞장서는 행태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듯이, 양성평등 혹은 여성해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페미니즘이 결국 초래하는 것은 가족의 와해인 것이다.

IV. 나가면서

본 발제는 유엔을 통한 ‘다양한 가족’ 개념의 등장 및 확산의 경위와 이로 인한 전통 가족 와해의

154)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231.

위기를 살펴봤다. 1960년대에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남녀갈등이 악화 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함께 양성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성별 구분 자체가 무의미화 되면서 보편적 가정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유엔이라는 국제무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됐는데, 1990년대에 성과 재생산 권리 및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권리가 인권으로 전면에서 등장하면서 가족 개념을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유엔의 국제대회를 통해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는데, 이들 기구 역시 유엔과 흐름을 같이 하며 기존의 보편적 인권 및 자연권과 상충되는 편향적 인권만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가족 개념을 재해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수천 년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사회 안정의 기본 단위로서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쉽게 왜곡되거나 재해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가족은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에 전통적 가치와 이념을 전승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가족을 성차별의 근원지라는 이유로, 혹은 비이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모든 문화에 역사에 걸쳐 존재하는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인 가족을 와해시키고 임의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족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질서의 근간인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다.

사회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달고 있는 이 때에 가족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 혼인과 혈연을 기반으로 배려와 사랑, 헌신과 책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결코 편향적인 이데올로기의 실현 및 개인의 이기적인 권리 주장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